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2,151,790	20,764,554
일반회계	597,543,007	17,926,290
특별회계	94,608,783	2,838,263
공기업특별회계	65,954,732	1,978,642
상수도사업	20,304,680	609,140
하수도사업	45,650,052	1,369,502
기타특별회계	28,654,051	859,622
의료급여기금	1,889,534	56,6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84,012	35,520
밀양담주변지역지원	258,244	7,74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252,084	37,563
수질개선관리	4,577,114	137,313
농공지구조성	4,254,743	127,642
중소기업육성자금	5,619,684	168,591
보건진료	2,098,205	62,946
농업발전기금	7,520,431	225,61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15,8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6,1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